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

(윤후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645
----------	-------

발의연월일 : 2026. 3. 20.

발 의 자 : 윤후덕 · 염태영 · 조정식
한정애 · 박지원 · 임미애
차지호 · 서영석 · 진성준
홍기원 · 이재강 · 조승래
김주영 · 김병주 · 남인순
허영 · 김태선 · 이인영
김성희 · 박민규 · 김준형
정일영 · 오세희 · 김영진
이춘석 의원(25인)

제안이유

평화통일은 대한민국헌법의 중요한 기본원리 중 하나임.

그동안 국내 · 외 정세 변화에 맞춰서, 또는 남북관계의 굴곡에 따라 평화통일정책과 관련된 여러 개별 법률들이 제정되고 시행되어 왔으나 「대한민국헌법」 제4조(“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를 규정한 기본법적 성격의 법률은 부재하다는 평가가 있음.

평화통일은 장기적 국가 과제로서 헌법의 기본이념 아래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의 추진이 중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입

법 상황으로 인하여 통일과 남북관계를 둘러싼 정쟁 및 정권의 교체에 따른 기존 정책의 폐지와 새로운 정책의 추진이 반복되어 왔음.

이에, 「평화통일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평화통일을 위한 정부의 의무를 규정하고 평화통일조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일관되게 평화통일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함.

또한, 평화통일은 우리 민족의 염원을 이루는 과정이기에 통일정책 수립과 추진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지만 제도적 부재로 인해 주로 정부와 일부 전문가 집단에 의해 이루어져 왔음.

국민 주권 시대를 맞이하여, 동 법의 제정을 통해 평화통일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통일 달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한반도평화통일방안 수립 절차(안 제10조), 초안 마련시 사회적 대화 실시(안 제10조제3항) 및 초안 국회 보고(안 제10조제4항), 통일방안 확정 및 공포 절차 등(안 제11조)을 규정하여 통일방안에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려 함.

다. 평화적 통일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통일정책 수립 관련 사회적 대

화 실시(안 제13조), 평화통일전문인력 양성 노력(안 제14조), 평화
통일문화 진흥(안 제15조), 평화통일 공공외교 추진(안 제16조), 평
화통일 대국민 보고(안 제17조) 등을 규정함.

라. 평화적 통일정책 추진 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한반도평화특별사절
(안 제19조), 지역별 평화통일기반조성 지원(안 제20조), 평화통일활
동 민간단체 지원(안 제21조) 등을 규정함.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통일 달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념·세대·계층·지역 등에 따른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도록 하고, 남한과 북한이 상호 존중에 따른 대화와 협력을 이어나가도록 하며,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국제평화를 위하여 남한과 북한이 협력하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화통일기반조성”이란 평화통일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제도적·문화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2. “평화통일정책”이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산하기 위하여 정부가 수립·추진하는 일련의 정책을 말한다.

3. “한반도평화통일방안(이하 통일방안이라 한다)”이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해 나가기 위한 목표와 이념, 과정과 절차 등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수립하고 확정된 방안을 말한다.
 4. “사회적 대화”란 한반도 평화적 통일에 대하여 시민들이 상호 인정과 존중의 원칙에 따라 대화·숙의하며 쟁점에 대한 이해를 높이거나 공통의 인식을 형성해 가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5. “평화통일문화”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사회 구성원의 가치관 및 행동양식과 이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사회 환경을 말한다.
 6. “평화통일 공공외교”란 정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외국 국민들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문화와 학술 활동을 바탕으로 한 직접적·간접적인 교류와 접촉 등을 통해 한반도평화통일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평화적 통일기반 구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타 법률에 관련된 사항의 규정 및 시행에 있어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원칙에 부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2장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정부의 책무

- 제5조(국민참여 보장) ① 정부는 평화통일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과정

에서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한다.

② 정부는 국민이 평화통일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참여하는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 국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제6조(평화통일문화 진흥) ① 정부는 국민의 평화통일에 대한 이해 제고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평화통일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평화통일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제7조(국제적 협력과 우호적 환경 조성) ①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우호적 국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평화적 통일을 위한 국제적 지지와 이해를 확보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다자간 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한다.

제8조(기타 필요한 정책 수립 및 조치) ① 정부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사항 외에도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이 법에 규정된 정부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도상의 조치와 예산·인력의 확보 등 재정상·행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항에 관한 정부의 정책에 협력하고, 지역의 평화통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한반도평화통일방안

제10조(한반도평화통일방안의 수립)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운 통일방안의 수립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2. 국민의 청원이 있는 경우
3. 국회의 결의로 통일방안 수립 및 변경을 촉구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의결 또는 요구가 있는 경우, 통일부장관은 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통일방안의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통일방안의 초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방안의 제목
2. 통일방안이 지향하는 가치
3. 통일한반도의 미래상
4. 통일방안의 추진원칙(또는 통일을 이루는 원칙)
5. 통일을 달성하는 과정과 절차
6.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통일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사회적 대화를 실시하여 국민의 의

견을 수립하고 이를 초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통일방안 초안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통일방안의 초안 작성 및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통일방안의 확정) ① 정부는 제10조에 따라 완성된 통일방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의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통일방안을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통일방안의 확정 및 공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통일방안의 이행 및 수정) ① 통일부장관은 제3장에 따라 수립·확정된 통일방안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통일방안 일부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정안을 마련한 후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변경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통일방안의 이행 및 수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평화적 통일정책의 수립 및 추진

제13조(평화통일정책을 위한 사회적 대화) ①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평화통일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일반 시민, 민간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추진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평화통일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통일방안 및 평화통일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평화적 통일 문제 관련 국민 간 의견 차이가 심하여 논의가 필요한 사항
3. 평화적 통일 문제 관련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제도화 또는 정책화가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평화통일정책을 위한 사회적 대화는 사회적 대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한다.

제14조(평화통일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법·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평화통일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이하 “평화통일전문인력”이라고 한다)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전문 분야별 평화통일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 과정 등을 개발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평화통일문화의 진흥) ① 정부는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의 이해

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국민 캠페인과 홍보사업을 추진하며, 평화통일 문화행사를 개최·지원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청소년·청년 세대가 평화통일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평화통일 공공외교) ① 정부는 국제사회 평화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평화통일 공공외교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평화통일 공공외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남북관계 및 한반도 평화통일에 관한 지식 및 정보의 제공
2. 국내외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3. 국제사회 평화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소통 강화, 학술회의 및 교류, 연구지원, 국제회의 운영, 문화행사 개최
4. 평화통일 공공외교 관련 교육 및 홍보 등 지원사업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평화통일 공공외교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③ 통일부장관은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재외동포사회와의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17조(평화통일정책의 대국민 보고) ① 정부는 국민들이 평화통일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평화통일정책 수립 및 추

진 현황을 정리하여 매년 국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통일정책의 성과 및 평가
2. 평화통일과 관련한 국내·외 인식
3.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현황에 대한 분석 및 전망
4. 남북 교류 협력 추진 현황 및 전망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국민에게 보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평화통일정책 보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사전협의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화통일정책 또는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을 입안하거나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평화통일정책 수립에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 및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평화적 통일정책 추진 기반의 조성

제19조(한반도 평화를 위한 특별사절) ① 한반도평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하여 통일부에 한반도평화특별사절을 둘 수 있다.

② 한반도평화특별사절은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한반도 평화 관련 주변국과의 소통
2.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공감대 확산
3. 국제사회에서 평화통일문화 활동 협력
4. 그 밖에 대통령이 한반도평화통일을 위해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③ 한반도평화특별사절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의 대북특별사절을 겸임할 수 있다.

④ 한반도평화특별사절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임무·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지역별 평화통일기반 조성) ① 정부는 지역의 평화통일기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평화통일기반 조성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평화통일기반 조성에 관한 주민 참여 확대, 지역주민 등에 대한 평화통일 관련 교육·체험·전시 프로그램 개발·운영
2. 지역사회 평화통일기반 조성 관련 기관·단체의 활동 지원 및 이

들 기관·단체와의 연계·협업 또는 통합 관리·운영

3. 지역별 맞춤형 평화통일기반 조성 정책 수립 및 평화통일기반 조성 사업의 지원

4. 평화통일정책 및 북한 이해를 위한 정보와 자료 제공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적응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지원

6.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평화통일기반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통일부장관은 시설의 설치와 운영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위임하는 경우 업무의 수행 및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는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도지사는 사전에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시설의 설치·운영 및 시·도지사에 대한 위임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① 정부는 평화통일기반 조성과 관련한 민간 차원의 다양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간단체 등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평화통일기반 구성에 기여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다만, 지원하는 사업이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평화통일정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공모 방식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반도평화특별사절, 지역별 평화통일기반 조성 시설 설치, 민간단체 지원 등은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이 법 이전의 통일방안)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는 통일방안은 이 법에 따라 수립 및 확정된 것으로 본다.